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4) 감사상의 주의의무 (동법시행령 제17조의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 (5) 감사공개원칙 (동법시행령 제17조의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침

-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

- (3)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종합·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 (4) 본회의 의결

200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안번호	342
------	-----

제안년월일 : 2003년 10월 2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I. 감사개요

- 1.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2. 감사기간 : 2003. 11. 21(금) ~ 11. 30(일) <10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o 본청, 직속 및 하부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 o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4. 감사중점사항

- o (2002. 11~2003.10. 31 기간 중)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o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과 관련된 사항
- o 시민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 5. 관계법규

- o 지방자치법 제36조
- o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2, 제19조의4
- o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o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II.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03. 11. 21(금)~11. 30(일) <10일간>
 ※ 제25회 정례회 의사일정
 - 회기 : 2003.11.20(목)~12.19(금) <30일간>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없 음
행정자치 위원회	◦ 감 사 관 ◦ 비상기획관 ◦ 행 정 국 ◦ 재 무 국 ◦ 소방방재본부 ◦ 공무원교육원	없 음
재정경제 위원회	◦ 경영기획실 ◦ 정보화기획단 ◦ 산 업 국 ◦ 농업기술센터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 농수산물공사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 시립근로자복지관
환경수자원 위원회	◦ 환경국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차량정비사업소 ◦ 제주도여미지식물원 ◦ 어린이대공원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소 ◦ 수도사업소(11개소) · 중부, 서부, 북부, 성북, 은평, 동부, 남부, 강동, 강남, 영등포, 강서수도사업소 ◦ 정수사업소(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정수사업소 ◦ 수도자재사업소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없 음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교육문화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국 ◦ 홍보기획관 ◦ 대변인 ◦ 시립미술관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서울시교육청
보건사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여성국 ◦ 보건환경연구원 ◦ 동부·아동·은평·서대문병원 ◦ 남부·북부·중부여성발전센터 ◦ 여성보호센터 ◦ 아동복지센터 ◦ 지방공사강남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서울여성 ◦ 시립보라매병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건설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획국 ◦ 하수처리사업소(2) - 중랑, 난지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 건설안전본부 ◦ 도로관리사업소(6) -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 시설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탄천환경 ◦ 주식회사 서남환경
도시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국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 주택국 ◦ 도시개발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없 음</p>
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국 ◦ 지하철건설본부 ◦ 교통방송본부 ◦ 지하철공사 ◦ 도시철도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없 음</p>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운영위원회 (15)	박주용	김춘수 서승제	김민, 김유현, 김종문, 류성열, 신영선, 이은석, 이한기, 임동규, 임승엽, 정창희, 민연식, 손석기	이청수, 이재덕, 조성천, 이계홍 김갑연, 김명신
행정자치위원회 (11)	황을수	이일희 서승제	신기철, 윤학권, 이종필, 임동규, 장영호, 전명환, 하종삼, 유대운	김태호, 최철규, 이해중, 강득수 한혜현, 장미영
재정경제위원회 (13)	안병소	유승주 정승우	김경술, 김종문, 박덕경, 성하삼, 이은석, 임한중, 정병인, 정호동 조규성, 심재욱	김남중, 김용환, 전상희, 안창원, 이영주, 김은주
환경수자원위원회 (11)	진두생	이동거 정홍식	권영하, 김성구, 박주용, 이훈구, 조천휘, 한명철, 최미란, 이해식	김종식, 임수근 임영우, 이대희 김일경, 김효영
교육문화위원회 (14)	김기성	최계락 유선목	김귀환, 김명숙, 김민, 김운기, 부두완, 서종화, 이강일, 이치화, 임승엽, 정연희, 김홍식	윤병국, 김선석, 고정도, 정여원 정희숙, 황수영
보건사회위원회 (12)	장수원	최재익 정선순	강영원, 김예자, 박시하, 성성용, 이정선, 조일호, 하태종, 한봉수, 나종문	김동수, 박재용, 구재성, 김민호, 한은아, 유연숙
건설위원회 (14)	장기만	김동훈 박래학	김종화, 김춘수, 성무원, 송창대, 유재운, 이지철, 채갑식, 최근희, 한응용, 허만섭, 민연식	안석수, 엄규용, 강윤규, 김운수, 이혜경, 지명숙
도시관리위원회 (15)	명영호	김기철 정동일	김갑룡, 김유현, 김진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병구, 이광국, 이현구, 한기웅, 한명철, 황명선	양재대, 이병수 박명서, 김명환, 심원보, 김은미, 박해기
교통위원회 (11)	조성대	최홍우 문진국	백의중, 신영선, 이대일, 이입주, 이종은, 이한기, 정창희, 손석기	임령, 이영복, 최경환, 이홍재, 김은숙, 이순경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직원을 2003행정사무감사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무보조원 (속기사, 방송요원, 타자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5.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간			
운영위원회	11. 29(토)	10:00	·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11. 21(금)	10:00	· 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5(화)	10:00	· 비상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소방방재본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7(목)	10:00	· 공무원교육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 28(금)	10:00	· 감사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재정경제위원회	11. 21(금)	10:00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 · 농수산물공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2(토)	10:00	· 농업기술센터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신용보증재단 · 산업진흥재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5(화)	10:00	·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 한남직업전문학교 · 상계직업전문학교 · 엘림직업전문학교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시정개발연구원 · 경영기획실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7(목)	10:00	· 산업국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8(금)	10:00	· 정보화기획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1. 29(토)	10:00	· 시립근로자복지관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환경수자원위원회	11. 21(금)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연구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본부
	11. 22(토)	10:00	· 수도자재사업소	현장	
	11. 24(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정수사업소(6개) - 수도사업소(11개) - 수도자재사업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사업소
	11. 25(화)	10:00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	한강시민 공원사업소
	11. 26(수)	10:00	· 환경국 - 제주도여미지식물원 - 어린이대공원	"	환경·공원 녹지조경 분야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 위원회	11. 27(목)	10:00	· 환경국 - 차량정비사업소	"	대기·수질 폐기물 분야 환경국산하 사업소
	11. 28(금)	10:00	· 환경국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환경국 산하 사업소
교육문화 위원회	11. 21(금)	10:00	· 문화국 · 서울역사박물관 · 시립미술관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	
	11. 22(토)	10:00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11. 24(월)	10:00	· 홍보기획관 · 대변인 · 시립대학교	"	
	11. 25(화)	10:00	· 서울시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11. 26(수)	10:00	·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원, 학생체육관,마포평생학습관, 정독, 남산, 용산, 양천도서관)	"	
	11. 27(목)	10:00	· 서울시교육청	"	
	11. 28(금)	10:00	· 서울시교육청	"	
보건사회 위원회	11. 21(금)	10:00	· 복지여성국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재단법인 서울여성	현장	
	11. 25(화)	10:00	· 보건환경연구원	"	
	11. 26(수)	10:00	· 강남병원	"	
	11. 27(목)	10:00	· 보라매병원	"	
	11. 28(금)	10:00	· 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 (4개 시립병원, 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	
건설위원회	11. 21(금)	10:00	· 건설기획국	건설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중랑, 난지하수처리장 · (주) 탄천환경 · (주) 서남환경	난지하수처리 사업소 (주)서남환경	
	11. 25(화)	10:00	·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본부 회의실	
	11. 26(수)	10:00	· 도로관리사업소(동부, 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건설안전본부 회의실	
	11. 27(목)	10:00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의실	

위원회별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건설위원회	11. 28(금)	10:00	·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건설위원회 회의실	
	11. 29(토)	10:00	·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건설위원회 회의실	
도시관리 위원회	11.21(금)~ 11.22(토)	10:00	· 지역균형발전추진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24(월)~ 11.25(화)	10:00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26(수)~ 11.27(목)	10:00	· 주택국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11.28(금)~ 11.29(토)	10:00	· 도시개발공사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교통위원회	11. 21(금)	10:00	· 교통국	교통위원회 회의실	
	11. 22(토)	10:00	· 교통국	교통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지하철건설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11. 25(화)	10:00	·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회의실	
	11. 26(수)	10:00	·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 회의실	
	11. 27(목)	10:00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11. 28(금)	10:00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11. 29(토)	10:00	· 교통방송본부	교통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착안사항

- (2002. 11~2003. 10 기간중)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관한 사항
- 2003년도(10. 31까지)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감사위원회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

(다음 페이지에 계속)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등 : 공통
가. 감사자료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11~2003.10중)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각종기금포함) ◦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기금포함) ◦ (2002.11~2003.10중)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2002.11~2003.10중)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의 요구 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연도별, 민원종류별, 감사기관별로 작성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1)」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2003. 10. 25(토)까지 제출
-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씩을 의장에게 2003. 10. 27(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다. 요구자료 제출

- 피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2003년 11월 14일(금)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

8.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운영위원회의 경우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공보실장, 담당관 (2명)
- (2) 상임위원회의 경우
 -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
- (3)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실비보상 (조례 제8조)
 - 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 (조례 제10조, 11조)

다. 감사진행순서(예시)

-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별첨 2)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5) 업무현황보고·청취

-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동법시행령 제17조의7)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4) 감사상의 주의의무 (동법시행령 제17조의8)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 (5) 감사공개원칙 (동법시행령 제17조의9)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늦어도 3일전에 통보(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침

-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별첨3)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
- (3)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 후, 운영위원장을 참조하여 의장에게 2003. 12. 10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송부
- (4)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종합·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 (5) 본회의 의결

10. 기타사항

- 가. 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함.
- 나.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2003. 11. 14(금)까지 해당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다. 감사자료의 작성 기준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2. 11. 1~ 2003. 10. 31 기준으로 연도별 별지 작성